

'92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

검 토 보 고 서

1993. 11.

내 무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# 목 차

I. 결 산 현 황 .....	217
○ 세입결산 총괄 .....	217
○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.....	220
○ 세출결산 총괄 .....	225
○ 과목별 세출결산 .....	227
II. 내 무 국 소 관 .....	231
III. 민 방 위 국 소 관 .....	240
IV. 소 방 본 부 소 관 .....	243
V. 공 무 원 교 육 원 소 관 .....	246
VI. 증 평 출 장 소 소 관 .....	249
VII. 예 비 비 지 출 .....	255

# I . 결 산 현 황

# I. 결산현황

## 1. 세입결산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예산액 (1)	징 결 정 액 (2)	수 납 액 (3)	비 율		불 납 결 손 액	미수납액
				1 : 3	2 : 3		
합 계	547,735	590,188	568,592	103.8	96.3	120	21,475
일반회계	307,211	354,306	337,154	109.7	95.2	120	17,033
특별회계	240,524	235,882	231,438	96.2	98.1	-	4,444
○ 공 기 업	91,869	89,594	85,158	92.7	95.0	-	4,436
- 공영개발사업	79,516	76,354	76,354	96.0	100	-	-
- 지역개발기금	1,234	1,263	1,255	101.7	99.4	-	8
○ 중 기 관 리	1,347	2,055	2,055	152.6	100	-	-
○ 주 택 사 업	12,507	12,520	12,520	100.1	100	-	-
○ 새마을소득	98	98	98	100.2	100	-	-
○ 공유팀관리	671	734	734	109.3	100	-	-
○ 지방양여금 관 리	53,282	53,264	53,264	99.9	100	-	-

-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477억3천5백만원에 대하여 107.8%에 해당하는 5901억8천8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.
-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424억5천3백만원은 일반회계가 110.9%인 470억9천5백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예산보다 46억4천2백만원이 적게 징수결정되었음.
- 미수납액 214억7천6백만원은 일반회계가 79.3%인 170억3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44억4천4백만원으로 20.7%임.
- 불납결손액 1억2천만원의 내역은 일반회계가 1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음.

## 2.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

### 가. 일반회계

#### (1) 세 입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 (1)	징 결 정 액 (2)	수 납 액 (3)	비 율			불 납 결 손 액 (4)	미수납액
				1 : 3	2 : 3	2 : 3		
합 계	307,211	354,306	337,154	115.3	109.7	95.2	120	17,032
지 방 세	81,360	125,086	108,761	153.7	133.7	86.9	117	16,208
세 외 수 입	84,131	87,286	86,459	103.7	102.8	99.1	3	824
○ 재산임대 수 입	63	68	67	108.2	106.4	98.3	-	1
○ 사용료수입	3,231	3,558	3,536	110.1	109.4	99.3	-	76,354
○ 수수료수입	2,102	2,272	2,272	108.0	108.0	100.0	-	-
○ 사업장수입	722	735	735	101.7	101.7	100.0	-	-
○ 적자수입	1,984	2,766	2,766	139.4	139.4	100.0	-	-
○ 재산매각 수 입	3,429	3,351	3,250	99.7	94.8	97.0	-	101
○ 이 월 금	65,070	65,070	65,070	100.0	100.0	100.0	-	-
○ 부 담 금	4,786	5,195	5,004	108.5	104.5	96.3	-	192
○ 잡 수 입	2,645	3,880	3,671	146.7	138.8	94.6	-	209
○ 과년도 수 입	100	391	89	390.8	89.2	22.8	3	299
지방교부금	84,321	84,321	84,321	100.0	100.0	100.0	-	-
보 조 금	57,398	57,613	57,613	100.4	100.4	100.0	-	-

-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072억1천1백만원에 대하여 115.3%에 해당하는 3543억6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,
-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470억9천5백만원의 내역은
  - . 지방세의 세원발굴등으로 437억2천6백만원,
  - . 세외수입에서 31억5천5백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음은 이자수입에서 7억8천2백만원
  - . 사용료수입에서 3억5백만원을 초과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.
- 징수결정된 3,543억6백만원중 95.2%에 해당하는 3,371억5천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71억5천2백만원중 결손처분된 1억2천만원을 제외한 170억3천2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.
 

. 지방세	162억8백만원
. 세외수입	8억2천4백만원

-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1억2천만원은

. 지방세가 1억1천7백만원으로 세원별 내역은

{	취득세	1천7백만원
{	면허세	5백만원
{	소방공동시설세	1백만원
{	과년도수입	9천4백만원 이며,

. 불납 결손 사유는

{	행방불명	3천3백만원 (19%)
{	시효소멸	2천만원 (59.2%)
{	무재산	1천6백만원 (18.6%)
{	기타	5천1백만원 (3.1%)으로 나타나고 있으며

. 세외수입 3백만원은 과년도 사용료 수입으로 시효소멸등 부득이한 사유로 내역되어 불납결손처분한것으로 사료됨.

○ 미수납액 170억3천23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4.8%로서 그 사유는

○ . 행 방 불 명	8억5천4백만원 ( 5.01%)
. 징 수 유 예	3백만원 ( 0.02%)
. 채무자재력부족	69억6천4백만원 (40.89%)
. 납 세 자 태 만	12억7천2백만원 ( 7.4 %)
. 재 산 압 류	68억9천3백만원 (40.47%)
. 기 타	10억4천6백만원 ( 6.1 %)

채무자 재력부족, 재산압류, 납세자태만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.

○ '92세입결산은 예산액보다 15.3% 상회하는 징수결정을 하였고 95.2%의 수납실적을 거양함으로서 차질없는 세수확보를 기하였다 하겠음.



나. 특별회계

회 계 별	예산액 (1)	징결 정액 (2)	수납액 (3)	비율			불 결 손 액 (4)	미수납액 (5) (2-3-4)
				1 : 3	2 : 3	2 : 3		
합 계	240,524	235,883	231,438	98.1	92.7	98.1		4,444
○ 공영개발 사 업	91,869	89,354	85,158	97.5	92.7	95.0		4,436
○ 지역개발 기 금	79,516	76,354	76,354	96.0	96.0	100		
○ 도로개발 중기관리	1,234	1,263	1,255	102.3	101.7	99.4		
○ 주택사업	1,347	2,055	2,055	152.6	152.6	100		
○ 의료보호 기 금	12,507	12,520	12,520	100.1	100.1	100		
○ 새 마을 소득지원	98	98	98	100.2	100.2	100		
○ 공 유 립 관 리	671	734	734	109.3	109.3	100		
○ 지방양여 금 관리	53,282	53,264	53,264	99.9	99.9	100		

○ 공영개발사업등 8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,405억2천4백만원에 대하여 98.1%에 해당하는 2358억8천3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바 그 내용은

- .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  2천9백만원
- . 주택사업특별회계   7억8백만원
- .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  1천2백만원
- .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47천원
- . 공유림관리특별회계   6천3백만원이 초과 징수결정된
- . 공영개발사업 및 지역개발기금,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에 미달하는 반면 실적을 보이고 있음.

-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  67억1천1백만원
-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  31억6천2백만원
-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  1천8백만원

○ 징수결정된 2,358억8천3백만원중 98.1% 해당액인 2,314억3천8백만원을 수납하였고, 44억4천4백만원이 미수되었는바

○ 이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895억9천4백만원에 대하여 851억5천8백만원(95.0)을 징수하고 44억3천6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 사유는 가경2지구 택지매출 미수금이며

○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2억6천3백만원에 대하여 12억5천5백만원 (99.4%)을 징수하고 8백만원을 미수납 하였는바 그 사유는 차선도색 수입중 도로 공사의 사고이월로 준공을 하지않아 발생한 것임.

### 3. 세출결산 총괄

( 단위 : 백만원 )

회 계 별	예 산 액 (1)	지출원인 행 위 액 (2)	지 출 액 (3)	비 율 1 : 3	다음년도 이 월 액 (5)	불 용 액 (6)
합 계	547,735	460,301	446,851	81.6	16,544	84,339
일 반 회 계	307,210	287,709	280,337	91.3	8,948	17,925
특 별 회 계	240,524	172,513	166,513	69.2	7,596	66,415
○ 공 기 업	171,385	104,788	102,215	59.6	4,086	65,083
- 공영개발사업	91,869	62,469	59,896	65.2	4,086	27,887
- 지역개발기금	79,516	42,320	42,320	53.2		37,196
○ 중 기 관 리	1,234	992	992	80.4		242
○ 주 택 사 업	1,347	909	909	67.5		438
○ 의 료 보 호	12,507	12,327	12,327	98.6		180
○ 새마을소득	98	41	41	42.1		56
○ 공유팀관리	671	277	277	41.2		394
○ 지방양여금 관 리	53,282	53,258	49,751	93.4	3,510	20

-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5477억3천5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 4468억5천1백만원으로서 평균 81.6%를 집행하였으며
-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 결산액이 91.3%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 69.2%임.
- 일반회계는 정상적인 결산이라 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는 부진한 집행을 하였음. 특히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6억7천1백만원 대 결산액이 2억7천7백만원으로 41.2%의 매우 저조한 집행이었음.
-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53.2%만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 및 석산개발사업 용자신청 포기와 예비비가 361억5천9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은데 기인함이며
- 공영개발특별회계는 65.2% 집행되었는데 이는 청사부지 취득가격재평가와 예비비 249억9천9백만원이 집행되지않아 저조한 집행이었음.

#### 4. 과목별 세출결산

가. 일반회계

( 단위 : 백만원 )

구 분	예산액 (1)	지출원인 행위액 (2)	지 출		다음년도 이월액 (5)	불용액 (6)
			금액 (3)	비율		
합 계	307,210	287,709	280,338	91.3	8,948	17,925
의 회 비	2,195	2,012	2,012	91.7	-	183
일반행정비	34,971	30,820	28,621	81.8	2,340	4,110
사회복지비	49,760	48,828	47,931	96.3	935	894
산업경제비	70,993	66,337	64,328	90.6	3,466	3,199
지역개발비	78,097	76,376	74,131	94.9	2,287	1,680
문화 및 체육비	14,829	14,680	14,660	98.9	21	149
민방위운영	11,679	10,117	10,117	86.6	-	1,562
지원제비	44,686	38,539	38,539	86.2	-	6,148

- 일반회계 예산액은 2,862억1천8백만원 이었으나 전년도에서 209억9천3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,072억1천1백만원임.

세출예산 전용액도 예산액의 0.15%인 4억3천4백만원 이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2억8천8백만원으로 지출내역은 단양위험도로개수비의 4건임.

- 다음년도 이월액 89억4천8백만원은 예산액의 2.9%로서
  - . 토지소유자 사망등의 사유로 매수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된 잠종장이전 토지매수비의 2건 14억7천만원이며,
  - . 대규모 공사로서 공기부족 및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된 도청 신관증축공사비의 34건으로 74억7천8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.

- 일반회계의 불용액 179억2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.6%에 해당되며 불용액발생에 주된 사유는

. 계획변경 취소	18억9천2백만원
. 집행사유 미발생	21억4천4백만원
. 예산절감	13억5천8백만원
. 집행잔액	100억9천2백만원
. 보조금 집행잔액	7천7백만원
. 기타(예산비)	23억6천1백만원

- 세출결산은 도금고 출납계예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.

-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음.

## 나. 특별회계

( 단위 : 백만원 )

구 분	예산액	지출원인 행위액	지 출		다음년도 이월액	불용액
			금액	비율		
합 계	240,524	172,592	166,513	69.2	7,596	66,415
○ 공영개발사업	91,869	62,469	59,896	65.2	4,087	27,887
○ 지역개발기금	79,516	42,320	42,320	53.2		37,196
○ 도로보수중기운영 관리	1,234	992	992	80.4		242
○ 주택사업	1,347	909	909	67.5		438
○ 의료보호기금	12,507	12,327	12,327	98.6		180
○ 새마을소득지원	98	41	41	42.1		56
○ 공유팀 관리	671	277	277	41.2		395
○ 지방양여금관리	53,282	53,258	49,752	93.4	3,510	20

○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의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2,405억2천4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,665억1천3백만원으로서 69.2%를 집행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,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의 불용액을 보면,

· 중기관리 특별회계 불용액	2억4천2백만원
- 예산절감	6천5백만원
- 예산집행잔액	1억4천9백만원
- 예비비	2천8백만원
· 주택사업 특별회계 불용액	4억3천8백만원
- 예산절감	1백만원
- 예비비	4억3천7백만원 이다
·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불용액	1억8천만원
- 예산집행사유 미발생	5백만원
- 예산절감	6백만원
- 예산집행잔액	4천1백만원
- 예비비	1억2천8백만원
·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불용액	5천6백만원
-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	1백만원
- 예비비	5천5백만원
·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불용액	3억9천5백만원
- 계획변경 취소	3억7천7백만원
-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	6백만원
- 예산집행잔액	1천1백만원
·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불용액	2천만원
- 예산집행잔액	2천만원



## II. 내 무 국 소 관

## II. 내 무 국 소 관

### 1. 세 출 총 괄

( 단 위 : 백 만 원 )

구	분	예산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계		60,557	55,096	2,436	3,025
일반회계	소 계	60,459	55,055	2,436	2,968
	총무인사행정	5,815	5,361	-	454
	문서통신관리	329	311	-	18
	시군행정운영	2,097	432	-	1,665
	새마을 사업	6,585	6,474	-	111
	지역 개발	15,893	15,812	46	35
	문화예술진흥	5,377	5,365	-	12
	문화재 관리	5,238	5,162	21	55
	체육진흥관리	3,928	3,877	-	51
	일반사회교육	37	34	-	3
	도민교육운영	5,589	5,050	427	112
	수입 관리	2,086	1,983	-	103
	회계 관리	5,477	3,224	1,942	311
	재산 관리	1,939	1,909	-	30
	지적 관리	69	61	-	8
	특별회계	소 계	98	41	-
새마을소득지원		98	41	-	57

· 내무국소관의 총예산현액은 605억5천7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04억5천9백만원 (99.8%)이며, 특별회계가 9천8백만원(0.2%)임.

· 총예산현액에서 550억9천6백만원이 지출되고 24억3천6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의 5.0%인 30억2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## 2. 일반회계 세출결산

### ○ 총무인사 행정분야에 있어서

- 내무국소관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인 604억5천9백만원과 대비해 불태 9.6%인 58억1천5백만원 규모로 92.2%인 53억6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, 7.8%인 4억5천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,

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 2억2천3백만원 (49.2%)
- 예산절감액 1억1천만원 (24.2%)
-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억1천만원 (24.2%)
- 계획변경취소분 1천1백만원 (2.4%)으로서

이는 인건비 및 제수당등과, 특별판공비의 계획변경취소분 및 사유미발생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'91결산시 불용액 4억5천6백만원과 대비해 불태 거의같은 수준의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는 당초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한 수요판단이 요구 된다 할 것임.

### ○ 문서통신관리 분야에 있어서는

- 총예산현액 대비 0.5%인 3억2천9백만원 규모로 94.5%인 3억1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, 5.5%인 1천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

·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이 1천1백만원으로 불용액의 61.1%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액이 7백만원으로 이는 자산취득비, 수용비 및 수수료, 지타수당, 공공요금, 자치단체 자본보조등의 집행잔액으로 이견이 없음.

○ 시,군 행정운영 분야에 있어서는

· 총예산현액 대비 3.5%인 20억9천7백만원 규모로 20.6%인 4억3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, 79.4%인 16억6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

·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 1천9백만원
- 예산절감액 1천5백만원
-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6억1천1백만원
- 계획변경취소분 2천만원 으로

주요사업비 성격의 보상금, 자치단체 경상보조금,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의 집행 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96.7%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차료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계획변경분과 자산취득,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, 특별판공비, 공공요금, 제수당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짜임새 없는 예산 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특히, 사업추진시 적기시행 여부등의 면밀한 검토분석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새마을 사업분야에 있어서는

· 총예산현액 대비 10.9%인 65억8천5백만원 규모로 98.3%인 64억7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, 1.7%인 1억1천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·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 5천7백만원
- 예산절감액 1천6백만원
- 계획변경취소분 3천8백만원 으로서

제수당 및 자치단체 자본,경상보조 등의 집행잔액과 기타수당 및 보상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계획의 취소로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

- 총예산현액 대비 26.3%인 158억9천3백만원 규모로 99.5%인 158억1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,  
0.3%인 4천6백만원은 증평보건소 진입로공사비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익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0.2%인 3천5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.
-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
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서 이점이 없음.

○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있어서는

- 총예산현액 대비 8.9%인 53억7천7백만원 규모로 99.8%인 53억6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.2%인 1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-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
예산집행잔액 5백만원, 예산절감액 5백만원, 집행사유미발생 및 계획변경취소분 2백만원으로 이점이 없음.

○ 문화재관리 분야에 있어서는

- 총예산현액 대비 8.7%인 52억3천8백만원 규모로 98.5%인 51억6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, 0.4%인 2천1백만원은 도요지분포지표 조사비로서 용역공기부족으로 익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,  
1.1%인 5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-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
  - 예산집행잔액 2천5백만원
  - 예산절감액 1천2백만원
  - 계획변경취소 1천8백만원으로 이점은 없으나  
예산편성에 부수되는 상황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체육진흥관리 분야에 있어서는

총예산현액 대비 6.5%인 39억2천8백만원 규모로 98.7%인 38억7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, 1.3%인 5천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 4천4백만원
- 예산절감액 2백만원
- 계획변경취소 5백만원 으로서

민경에 대한 경상보조의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취소분으로 이견이 없음.

○ 일반사회교육 분야에 있어서는

총예산현액 대비 0.06%인 3천7백만원 규모로서 91.9%인 3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, 8.1%인 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

이는 예산집행잔액이 1백만원, 예산절감액이 2백만원으로서 이견이 없음.

○ 도민교육원운영 분야에 있어서는

총예산현액 대비 9.2%인 55억8천9백만원 규모로 90.4%인 50억5천만원이 지출되었고, 7.6% 4억2천7백만원 중 도민교육원 청사이전 신축비 3억8천8백만원과 농기계정비훈련관신축비 3천9백만원이 설계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2.0%인 1억1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불용처리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 6천7백만원
- 예산절감액 2천7백만원
- 계획변경취소 1천8백만원 으로

이는 계세공과금 및 공공요금, 계수당 등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예산편성시 소요액 판단이 보다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수입관리 분야에 있어서는

총예산현액 대비 3.5%인 20억 8천 6백만원 규모로 95.1%인 19억 8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, 4.9%인 1억 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불용처리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 9천만원
- 예산절감액 1천 3백만원 으로

인건비 및 제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당초예산편서시 적정예산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액 판단에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회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

총예산현액 대비 9.1%인 54억 7천 7백만원 규모로 58.9%인 32억 2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, 35.4%인 19억 4천 2백만원이 신관중축 및 충무시설개수공사가 대규모공사 절대공기부족 및 관급자제납품지연으로 인해 익너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, 5.7%인 3억 1천 1백만원이 불용처 되었음.

불용처리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 2억 4천 4백만원
- 예산절감액 6천 6백만원
- 집행사유미발생 1백만원 으로

관서운영경비의 공공요금, 연료비, 차량비, 기본경상경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, 주요사업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에 대하여는 특별예산현액 대비 평균적 37.5%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는바, 이는 불필요예산을 과다책정한 사례로서 차후 세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됨.

○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

- 총예산현액 대비 3.2%인 19억3천9백만원 규모로 98.5%인 19억9백만원이 지출되었고, 1.5%인 3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예산집행잔액 2천만원과 예산절감액 1천만원으로서 이견이 없음.

○ 지적관리 분야에 있어서는

- 총예산현액 대비 0.1%인 6천9백만원 규모로 88.4%인 6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1.6%인 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 이는 수용비 및 수수료,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절감잔액 6백만원 예산절감 1백만원, 집행사유미발생 1백만원으로 이견이 없음.



### 3. 특별회계 세출결산

○ 내무국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인 9천8백만원중 41.8%인 4천1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58.2%인 5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

· 불용처리 원인으로는

·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백만원이며 예비비 5천5백만원 전액이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.

### III. 민 방 위 국 소 관

### III. 민 방 위 국 소 관

#### 1. 세 출 총 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예산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계	1,865	1,719	-	146
민 방 위 관 리	1,419	1,316	-	103
비 상 대 책	127	105	-	22
지 역 안 정	319	298	-	21

○ 민방위국소관의 예산현액 18억6천5백만원중 92.2%인 17억1천9백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7.8%인 1억4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#### 2. 세 출 결 산

○ 민방위국소관 총예산현액 18억6천5백만원중 7.8%인 1억4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6천9백만원으로 불용액의 47.3%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4천만원,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3천7백만원으로서

○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

· 민방위관리비에 있어

예산현액 18억6천5백만원 대비 76.1%인 14억1천9백만원중 7.3%인 1억3백만원,

. 비상대책비에 있어

예산현액 대비 6.8% 1억2천7백만원중 17.3%인 2천2백만원

. 지역안정비에서는

예산현액대비 17.1%인 3억1천9백만원중 6.5%인 2천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.

○ 이를 세분하여 보면

. 민방위 관리비 불용액 1억3백만원중

- 민방위운영관리 6천5백만원
- 민방위 시설장비 3천2백만원
- 민방위 교육훈련비 6백만원 으로

집행잔액 6천3백만원, 예산절감 1천5백만원, 계획변경취소 2천5백만원 인바,  
이는 인건비 및 제수당,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과 민방위시설장비에 따른 시설비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천5백만원이 계획변경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이며

. 비상대책비에 있어서는 불용액 2천2백만원중

- 비상대비업무 1천9백만원
- 청원경찰관리 1백만원
- 예비군관리 2백만원 으로

이는 집행잔액 6백만원, 예산절감액 4백만원, 계획변경취소분이 1천2백만원으로  
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잔액 및 기타제경비 등의 예산절감액이며 비상대비 훈련  
참가자에 지급되는 급식비가 계획이 변경취소 되므로서 발생한 불용액이며

. 지역안정비에 있어서는 불용액 2천1백만원중

- 지역안정 4백만원
- 방법활동 1천7백만원 으로

97.3%인 2천만원이 예산절감액으로서 이견이 없음.

#### IV. 소 방 본 부 소 관

## IV. 소방본부소관

### 1. 세출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계	9,721	8,316	-	1,405
소방관리	9,721	8,316	-	1,405

○ 소방본부소관의 총예산현액 97억2천1백만원중 85.5%인 83억1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14.5%인 14억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### 2. 세출결산

○ 소방본부소관 총예산현액 97억2천1백만원중 14.5%인 14억5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10억1천1백만원으로 불용액의 72.0%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2억6천2백만원,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3천2백만원으로서

· 불용발생 내역으로는

- 소방행정관리비에 있어

예산현액 97억2천1백만원대비 20.4%인 19억8천3백만원중 14.4%인 2억8천5백만원으로 집행잔액 2억4천8백만원, 예산절감액이 3천7백만원으로서 불용액중 87.1%가 집행잔액으로서

이는 인건비 및 제수당등과 차량유지에 따른 차량비 및 제세공과금의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과다 책정한 사례로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
- 소방시설장비에 있어서는

예산현액 대비 12.9%인 12억5천8백만원중 16.1%인 2억2백만원으로 집행잔액 2천7백만원, 예산절감 1억2천2백만원, 집행사유미발생이 5천3백만원으로서 주요사업 시설비의 예산절감액이 1억2천으로서 이건은 없음.

- 청주소방관서 운영에 있어서는

예산현액대비 38.3%인 37억2천6백만원중 15.8%인 5억8천7백만원으로 집행잔액 4억5천5백만원, 예산절감 5천3백만원 집행사유미발생 7천9백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계수당 등 차량유지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의 77.5%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당초예산편성시 면밀한 분석과 적정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- 충주소방관서 운영에 있어서는

예산현액대비 15.9%인 15억4천6백만원중 14.0%인 2억1천6백만원으로 집행잔액 1억9천2백만원, 예산절감액 2천4백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계수당 등 차량유지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에 관련한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의 88.9%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.

- 제천소방관서 운영에 있어서는

예산현액대비 12.5%인 12억8백만원중 9.5%인 1억1천5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바 집행잔액 8천9백만원, 예산절감액 2천6백만원으로 인건비 및 계수당 등에 기인한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의 77.4%를 차지하고 있음.

○ 소방본부소관 불용액 14억5백만원중

71.9%인 10억1천1백만원의 집행잔액 대부분이 인건비 및 계수당 등과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제경비가 잔액발생 주원인으로 분석되며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책정한데 기인한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다 할 수 있겠음.

## V. 공무원 교육원 소관



## V. 공무원교육원소관

### 1. 세출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계	1,120	1,023	-	97
교무관리	938	869	-	69
교관관리	19	15	-	4
교학관리	163	139	-	24

- 공무원교육원소관의 총예산현액 11억2천만원 규모중 91.3%인 10억2천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8.7%인 9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### 2. 세출예산

- 공무원교육원소관 총예산현액 11억2천만원중 8.7%인 9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 
 이는 예산집행잔액 6천만원, 예산절감액 2천만원, 계획변경취소 1천7백만원으로서 거의 대부분 인건비, 판서운영비, 기본경상비, 경상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들로 사표되기에 이견이 없음.
- 이를 세분하여 보면  
 . 교무관리 분야에 있어서  
 총예산현액 11억2천만원 대비 83.8%인 9억3천8백만원 규모로 92.6%인 8억6천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7.4%인 6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· 불용처리 내역으로는

- 인건비	2천2백만원
- 관서운영비	2천6백만원
- 기본경상비	4백만원
- 경상사업비	1천7백만원 으로

예산집행잔액이 4천4백만원, 예산절감액 1천만원,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1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,

○ 교관관리에 있어서는

총예산현액 대비 1.7%인 1천9백만원 규모로 78.9%인 1천5백만원이 지출 되었고, 21.1%인 1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

이는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및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집행잔액 2백만원 예산절감액 2백만원으로 이견이 없음.

○ 교학관리 분야에 있어서는

총예산현액 대비 14.5%인 1억6천3백만원 규모로 85.3%인 1억3천9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14.7%인 2천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이는 기타수당 및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과 수용비 수수료등의 예산절감액에 기인 한 것으로서 예산집행현액 1천4백만원, 예산절감액 8백만원, 계획변경취소 2백만원 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음.

## VI. 증 평 출 장 소 소 관

## VI. 증평출장소소관

### 1. 세출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계	18,003	15,185	1,922	896
· 일반행정비	7,907	7,031	281	595
· 사회복지비	2,980	1,916	921	143
· 산업경제비	729	571	121	37
· 지역개발비	6,046	5,365	599	82
· 문화체육비	248	221	-	27
· 민방위비	93	81	-	12

○ 증평출장소소관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80억3백만원임.

○ 현액에서 84.3%인 151억8천5백만원이 지출되고 10.7%인 19억2천2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.0%인 8억9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## 2. 일반회계 세출예산

### ○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

· 총예산현액 180억3백만원 대비 43.9%인 79억7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88.9%인 70억3천1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3.6%인 2억8천1백만원이 증평청사증축사업의 계속을 위해 익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, 7.5%인 5억9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·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	4억9천6백만원
- 예산절감액	5천5백만원
- 집행사유미발생액	4천4백만원 으로서

· 이는 각급 인건비 및 계수당 등과 공무원교육훈련비, 토지매입비 등이 과다책정 된바 금후 예산책정시 면밀히 분석하는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· 재무행정비 주요사업비중 증평청사 증축비 2억8천1백만원은 년내 완공이 지난하여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사료됨.

### ○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

· 총예산현액 대비 16.6%인 29억8천만원 규모로 현액의 64.3%인 19억1천6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30.9%가 이월된 9억2천1백만원중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여성회관 신축비 6억9천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,

광역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비 2억2천5백만원중 인근지역주민들의 심한반발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3천만원,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1억9천5백만원이 각각이월 되었으며, 4.8%인 1억4천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·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	7천7백만원
- 예산절감액	1천7백만원
- 집행사유미발생	4천3백만원
- 보 조 금	6백만원 으로

이는 각급 인건비, 보상금, 물품구입비 등의 집행잔액과 보조기관 인건비등의 집행사유미발생 등에의해 과다책정 불용처리 된것으로 인원관리 및 수요판단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산업경계비에 있어서는

· 총예산현액 대비 4.0%인 7억2천9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78.3%인 5억7천1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16.6%인 1억2천1백만원이 농어촌용수개발비 및 한밭대비소형관정 사업 및 개탕저장고 설치비가 동결기로 인한 공사중단 및 추수후 사업추진 지목 변경 농지전용.건축허가신청 지연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5.1%인 3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·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	2천1백만원
- 예산절감액	1천5백만원
- 계획변경취소	1백만원 으로

이는 물품구입비, 재료비 기타 공공요금 등에서 발생한 잔액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사전계획수립 및 이에따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

총예산현액 대비 33.6%인 60억4천6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88.7%인 53억6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9.9%인 5억9천9백만원이 중평종합개발계획수립 및 가로측조공사비(1억7천6백만원), 하수종합처리장 설계용역비(1억9천만원), 철도연변정비사업비(1천만원),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(2억2천3백만원)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1.4%인 8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

- |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|
| - 예산집행잔액  | 5천7백만원  |
| - 예산절감액   | 2천4백만원  |
| - 집행사유미발생 | 1백만원 으로 |

이는 인건비 및 주요사업 용역비, 시설비 등에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이견은 없으나 신중한 사업내역 검토로 과다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문화체육비에 있어서는

총예산현액 대비 1.4%인 2억4천8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89.1%인 2억2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, 이월액은 없으며 10.9%인 2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

- |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|
| - 예산집행잔액  | 1천4백만원  |
| - 예산절감액   | 1천2백만원  |
| - 집행사유미발생 | 1백만원 으로 |

문화예술진흥비의 공공요금 및 재료비 기타와 불품구입비 등과 문화재관리비의 시설비 및 예산절감액으로 이견이 없음.

○ 민방위비에 있어서는

. 총예산현액 대비 5.2 %인 9천3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87.1%인 8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12.9%인 1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.

.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

- 예산집행잔액 4백만원
- 예산절감액 5백만원
- 계획변경취소 3백만원 으로

이는 민방위 운영관리 보상금과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 및 보상금 등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민방위관련업무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서 이견이 없음.



## VII. 예 비 비 지 출

## VII. 예 비 비 지 출

(단위 : 원)

구 분	사 업 명	지출결정액	지 출 액	불 용 액	치 리 일 자	
					승인 및 결정	지출일자
내 무 국	연금지급금	54,753,000	54,752,400	600	'92.6.23	'92.6.27

공무원연금법 제61조2항 및 제65조2항에 의한 유족보상비로 5천4백7십5만2천4백원이 지출 되었으며 이견이 없음.

**참조**

**< 공무원 연금법 >**

**제61조 (유족보상금)** ①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①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**제65조 (비용부담의 원규)** ① 생략

②제3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, 부상,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<개정 87.11.28>